

사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가 2006. 6. 15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6. 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32호)

다 2006. 6. 27 :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사회복지과장 임귀자)

가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읍·면·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규정하려는 것임

나 주요내용

- 목적규정에 복지위원 항목 추가(안 제1조)
- 읍·면·동별 복지위원 정수를 정함(안 제14조의2)
 - 인구 10,000명 이하 : 2명
 - 인구 10,000명 초과 20,000 이하 : 3명
 - 인구 20,000명 초과 30,000명 이하 : 4명
 - 인구 30,000명 초과 : 5명

다 관계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근호)

-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4. 12월 대구 유아 사망사건 및 결식아동 급식 문제 등에서 드러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
- 「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추진과 관련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이 주요하게 대두됨에 따라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·면별로 각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
-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에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명을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
- 읍·면·동별로 정수에 따라 위촉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